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공고

2021년 제91호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는 토마토, 고추 등 가지과 작물에 해를 끼치는 식물바이러스이며, 잎과 꽃잎, 고사리 및 과실에 황반, 기형, 갈색 변성, 괴사 등의 증상을 일으켜 과실의 생산량과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위해성이 매우 크고, 종자와 함께 원거리 전파가 가능하며, 중국의 법정 수입식물 검역성 유해생물 임.

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방지하고 중국의 농업생산과 생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 및 관련 국제식물검역조치기준(ISPM)에 따라, 현재 수입토마토 (solanum lycopersicum)와 고추 속 (capsicum spp.) 종자의 원천 관리통제 검역요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만약,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식물검역 주관부서는 발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가성명에 명시해야 함. "This consignment of seeds is originated from_____ (country or area),where is free of ToBRFV." [이 종자는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_____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됨].

2. 만약,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가 발생하였지만, 국제식물검역조치기준(ISPM) 제4호 《비발생지역 조성요구》(ISPM No.4)에 따라 조성한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 비발생 지역의 경우, 식물검역 주관부서는 발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가성명에 명시해야 함 : "This consignment of seeds is originated from pest free area for ToBRFV." (이 종자는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3. 만약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가 발생하였고, 게다가 비발생지역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식물검역 주관부서는 반드시 경작지 조사를 실시하여, 그 재배지에서 생장기간에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전에 당해 종자에서 최소 3000개 (소량 종자는 최소 10%)의 대표적인 견본을 추출하여야 하며, RT-PCR법 혹은 실시간 형광 RT-PCR 법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식물검역 주관부서는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가성명에 명시해야 함 : "Field survey was carried out during the growth period of this consignment of seeds, no ToBRFV occurred

in the planting area. Prior to export, this consignment of seeds has been tested by RT-PCR (or real-time RT-PCR) and found free of ToBRFV.”[이 종자의 생장기간에 진행된 경작지 조사에서, 재배지에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음. 수출전의 RT-PCR (또는 실시간 형광 RT-PCR) 검사결과, 이 종자에는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가 없었음.]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수확한 종자에 대해서는 경작지 조사 요구의 면제가 가능하며,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가성명에 명시해야 함 : “This consignment of seeds was harvested before January 1st, 2022, tested by RT-PCR (or real-time RT-PCR) prior to export, and found free of ToBRFV.” [이 종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수확하였으며, 수출전의 RT-PCR(또는 실시간 형광 RT-PCR) 검사결과 결과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

4. 제3국 또는 지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는 토마토와 고추 종자속은 국제 식물검역 조치기준(ISPM) 제12호《식물 검역 증명서》 (ISPM No.12) 요구에 따라,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 식물검역 주관부서가 발급하고 상응하는 부가성명이 있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혹은 제3국 또는 지역의 식물검역 주관부서가 확인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

(1) 만약, 이 종자가 제3국 또는 지역에서 단지 저장을 하였거나 다른 화물과 조립하여, 유해생물로부터 오염되지 않았다면, 제3국이나 지역의 식물검역 주관부서는 경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2) 만약, 이 종자가 유해생물에 오염되었을 경우, 제3국 또는 지역의 식물검역주관부서는 수출 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성명에 명시해야 함 : “Prior to export, this consignment of seeds has been tested by RT-PCR (or real-time RT-PCR), and found free of ToBRFV.” [이 종자는 수출전 RT-PCR (또는 실시간형광RT-PCR) 검사결과에서,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가 없었음.]

5. 각 해관은 수입 토마토와 고추속 종자의 첨부 식물검역증명서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화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실시하며, 증명서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토마토 갈색주름 과일바이러스의 검출을 발견한 경우, 법에 의하여 반송하거나 소각처리함.

6. 본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이를 특별히 공고함.

해관총서
2021년 11월 12일